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56
----------	-------

발의연월일 : 2026. 7. 31.

발 의 자 : 이성권 · 안철수 · 조은희
이헌승 · 신성범 · 김 건
강명구 · 김용태 · 조승환
박수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출생률, 65세 이상 고령인구, 14세 이하 유소년인구 또는 생산가능인구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정·고시하고 있음.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현행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육기반·교육기반·의료기반의 확충,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등 특례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최초 지정일이 2021년 10월 19일으로 재지정 시기가 곧 도래할 예정인데, 인구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워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재지정되지 않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

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5조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 지역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지정 해제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장의 규정의 적용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5조(인구감소지역 지정 해제</u> <u>지역에 대한 특례) 국가와 지</u> <u>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위기</u> <u>대응의 연속성을 위하여 인구</u> <u>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u> <u>역에 대하여 지정 해제된 날부</u> <u>터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5장의</u> <u>규정의 적용을 연장할 수 있다.</u>